

 금융위원회	<h1>보도자료</h1>			 금융감독원
	<b>보도</b>	<b>배포 후 즉시</b>	배포	

<b>책 임 자</b>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 (02-2100-2680)	<b>담 당 자</b>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김 상 원 (02-3145-7700)		최 창 보 팀장 (02-3145-7730)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이 기 영 (02-3145-7290)		김 대 범 팀장 (02-3145-7731)
	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 손 호 근 (02-3149-0351)		윤용진 감리역 (02-3149-0358)
	공인회계사회 감리2본부장 한 진 희 (02-3149-0361)		조점호 감리위원 (02-3149-0353)

##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 5. 9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한국비엔씨 등 4개사에 대하여,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 비상장사인 엘브스오토모티브(주)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	<b>금융위원회 대 변 인</b> prfsc@korea.kr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2018.5.9. 의결)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한국비엔씨</p> <p>결산기 : 2016.12.31.</p> <p>코넥스시장상장법인</p> <p>업종 : 의료용 기기 제조업</p>	<p><b>【회사】</b></p> <p>①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식 미기재 (’16.12.31. 4,200백만원)</p> <p>- 회사는 토지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35억원)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토지 분양대금반환금에 근질권(설정한도 42억원)을 설정하였음에도, 해당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p> <p>[2016.12.31.]</p> <p>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p>	<p><b>회 사 :</b></p> <p>- 과징금 6.8백만원</p> <p>- 감사인지정 1년 (2019.1.1.~2019.12.31.)</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한국비엔씨</p>	<p><b>【감사인】</b></p> <p>①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감사절차 소홀 (’16.12.31. 4,200백만원)</p> <p>- 감사인은 회사의 자금차입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p>	<p><b>회계법인 바른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li> <li>- (주)한국비엔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ul> <p><b>공인회계사 :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한국비엔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li>- 직무연수 8시간</li> </ul> <p><b>공인회계사 : 1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한국비엔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b>㈜엘아이에스</b></p> <p>결산기 : 2012.12.31. 2013.12.31. 2014.12.31. 2015.12.31.</p> <p>코스닥시장상장법인</p> <p>업종 : 제조업 및 사후 면세업</p>	<p><b>【회사】</b></p> <p>① 신주인수권대가 등 과대계상 (’12.12.31. 1,730백만원, ’13.12.31. 1,392백만원 ’14.12.31. 2,009백만원, ’15.12.31. 1,576백만원)</p> <p>- 회사는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없이 복합금융상품의 부채가치를 과소산정하여, 신주인수권 대가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p> <p>[2012.12.31.]</p> <table border="0"> <tr> <td>당기순이익</td> <td>△ 14,165</td> <td>→</td> <td>△ 14,015</td> </tr> <tr> <td>자기자본</td> <td>24,257</td> <td>→</td> <td>22,527</td> </tr> </table> <p>[2013.12.31.]</p> <table border="0"> <tr> <td>당기순이익</td> <td>△ 3,534</td> <td>→</td> <td>△ 3,085</td> </tr> <tr> <td>자기자본</td> <td>22,387</td> <td>→</td> <td>20,995</td> </tr> </table> <p>[2014.12.31.]</p> <table border="0"> <tr> <td>당기순이익</td> <td>△ 25,432</td> <td>→</td> <td>△ 23,405</td> </tr> <tr> <td>자기자본</td> <td>12,654</td> <td>→</td> <td>10,645</td> </tr> </table> <p>[2015.12.31.]</p> <table border="0"> <tr> <td>당기순이익</td> <td>25,335</td> <td>→</td> <td>27,672</td> </tr> <tr> <td>자기자본</td> <td>55,928</td> <td>→</td> <td>54,352</td> </tr> </table> <p>②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p> <p>-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신주인수권대가 등이 과대계상되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함</p>	당기순이익	△ 14,165	→	△ 14,015	자기자본	24,257	→	22,527	당기순이익	△ 3,534	→	△ 3,085	자기자본	22,387	→	20,995	당기순이익	△ 25,432	→	△ 23,405	자기자본	12,654	→	10,645	당기순이익	25,335	→	27,672	자기자본	55,928	→	54,352	<p><b>회 사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 23.1백만원</li> <li>- 감사인지정 1년 (2019.1.1.~2019.12.31.)</li> <li>- 과태료 25백만원</li> </ul>
당기순이익	△ 14,165	→	△ 14,015																															
자기자본	24,257	→	22,527																															
당기순이익	△ 3,534	→	△ 3,085																															
자기자본	22,387	→	20,995																															
당기순이익	△ 25,432	→	△ 23,405																															
자기자본	12,654	→	10,645																															
당기순이익	25,335	→	27,672																															
자기자본	55,928	→	54,352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주)엘아이에스</p>	<p><b>【감사인】</b></p> <p>①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12.31. 1,730백만원, '13.12.31. 1,392백만원  '14.12.31. 2,009백만원, '15.12.31. 1,576백만원)</p> <p>- 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p>	<p><b>삼경회계법인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li> <li>- (주)엘아이에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li> </ul> <p><b>공인회계사 : 2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주)엘아이에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li> <li>- 직무연수 6시간</li> </ul>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엘브스오토모티브(주)</p> <p>결산기 : 2016.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제조업</p>	<p><b>【회사】</b></p> <p>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매출채권) 주식 미기재 (*16.12.31. 12,351백만원)</p> <p>-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재무제표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함</p> <p>[2016.12.31.]</p> <p>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p>	<p><b>회 사 :</b></p> <p>- 증권발행제한 2월 (2018.5.9.~2018.7.8.)</p> <p>- 감사인지정 1년 (2018.1.1.~2018.12.31.)</p>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p>보국전기공업㈜</p> <p>결산기 : 2016.12.31.</p> <p>비상장법인</p> <p>업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p>	<p><b>【회사】</b></p> <p>① 장기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6.12.31. 1,359백만원)</p> <p>- 회사는 거래처가 폐업을 하거나 장기간 회수실적이 없는 장기매출채권과 폐업상태 및 보유부동산의 경매처분 등 손상사건이 발생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선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547백만원 및 812백만원을 각각 과소계상함</p> <p>[2016.12.31.]</p> <table border="0"> <tr> <td>당기순이익</td> <td>203</td> <td>→</td> <td>△ 1,156</td> </tr> <tr> <td>자기자본</td> <td>20,524</td> <td>→</td> <td>19,165</td> </tr> </table>	당기순이익	203	→	△ 1,156	자기자본	20,524	→	19,165	<p><b>회 사 :</b></p> <p>- 증권발행제한 2월 (2018.5.9.~2018.7.8.)</p> <p>- 감사인지정 1년 (2018.1.1.~2018.12.31.)</p>
당기순이익	203	→	△ 1,156							
자기자본	20,524	→	19,165							

## ※ 주요 제재 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건당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유가증권발행 제한 또는 증권발행 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해외증권 발행 및 회생 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은 제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시장상장 법인 제외)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 직무연수

-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